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4. 4. 16 선고 2023가단26740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부종합

담당변호사 최원경

피 고 주식회사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성희

변 론 종 결 2024. 3. 5.

판 결 선 고 2024. 4. 16.

주 문

-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.
-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서 2022. 7. 8. 체결한 별지 기재 채권양도계약을 77,563,959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.
- 피고는 D 주식회사에게 제2항 기재 채권양도계약이 77,563,959원의 한도에서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[주위적 청구]

1. 주문 제2항과 같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77,563,95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[예비적 청구]

주문 제2, 3항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피보전채권

- 1) 원고는 주식회사 C(이하 ‘C’)으로부터 E 현장 등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커팅, 코킹 등과 관련된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고, 2022. 6. 30.까지 지급받지 못한 공사잔대금 채권 69,755,200원이 남아 있었다.
- 2)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76004호로 위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, 이 법원으로부터 2022. 12. 14.자로 “C은 원고에게 69,755,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. 7. 1.부터 2022. 10. 19.까지는 연 6%의,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”는 판결을 선고받았고, 위 판결은 2023. 1. 5. 확정되었다¹⁾. 2023. 7. 31.자 현재 위 판결에 기하여 원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원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는 77,563,959원[= 판결원금 69,755,200원 + 1,272,793원 (=69,755,200원 x 111/365년 x 0.06, 원 미만 버림) + 6,535,966원(= 69,755,200원 x 285/365년 x 0.12, 원 미만 버림)]이다.

나. C의 사해행위

1) C은 제3채무자 D 주식회사(이하 'D')에게서 지급받을 C의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2022. 7. 8. 피고 회사와 별지 기재와 같이 직불합의를 하였고(이하, '이 사건 채권양도계약'), C은 2022. 7. 28. 제3채무자 D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다음날인 2022. 7. 29. 제3채무자 D에게 도달하였다.

2) C이 피고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양도 통지를 할 무렵 그 적극재산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약 3억 원의 채권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22. 8. 16.자로 폐업신고를 한 반면에, 소극재산으로는 F보증보험 및 신용보증기금, 기업은행 등의 금융권 채무와 국세 등 채무로 대략 9억 원 상당의 채무2)가 있어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1 내지 4호증(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음)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의 C에 대한 77,563,959원의 채권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일 이전에 이미 성립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고,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대상인 C의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일반재산에 해당하며, C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C의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키고, 피고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어서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, C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,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나. 피고의 선의 주장 및 판단

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 및 증거들만으로는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

다. 원상회복의 방법

따라서 C과 피고 사이의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한 2022. 7. 8.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D에게 별지 기재 채권의 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.

원고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주위적 청구로 가액배상을 주장하기도 하나, 원상회복으로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 경우에만 가액배상이 가능한 것인바,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 및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가액배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 중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안홍준

별지

- 1) 위 채권은 공사대금 채권으로서 채권발생일은 2022. 6.경이다.
- 2) 갑 2-2호증의 채무 등을 모두 합산하여 보면 898,671,000원이 된다.